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06 발의연월일: 2021. 7. 2.

발 의 자:김병욱・양향자・박성준

백혜련 · 소병훈 · 유정주

이용빈 · 홍성국 · 정성호

민형배 · 서동용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대신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대면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식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현금을 대면 편취하거나 직접 인출하는 방식의범죄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제재수단을 적용하기 곤란한 실정임.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직접 교부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어 현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을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 에 포함시킴으로써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 호 · 제5호 및 제2조의5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하는"을 "하거나 직접 교부하도록 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체하는"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체된"을 "이체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된"으로 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이체 또는 송금을"을 "이체, 송금 또는 인출을"로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타인으로 하여금 금전을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	2
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	
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	
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	,,
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	
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기·
<u>하는</u> 행위	하거나 직접 교부하도록
	하는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	나
금을 송금· <u>이체하는</u> 행위	<u>이체하거나 인출</u>
	하는
2의2. ~ 4. (생 략)	2의2. ~ 4. (현행과 같음)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	5

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 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 7. (생략)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송금을 기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 지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_
이체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된6. • 7. (현행과 같음)	_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	
시조치) ①	-
	-
	-
	-
	-
	-
	-
	_
이체, 송금 또	-
이체, 송금 또 는 인출을	-
	
는 인출을 	
는 인출을 	-

<u><신 설></u>	3. 타인으로 하여금 금전을 교
	부하도록 하는 행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